

보도시점 2026. 8. 3.(월) 조간
2026. 8. 2.(일) 12:00

배포 2026. 7. 31.(금)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

- 94개소 대상, 연 1~2% 저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 시설 개선, 장비 교체 등 폭넓은 사용으로 정책자금 지원 실효성 강화 -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융자금)이 올해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 94개소에 장기·저리의 융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어렵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98개 시·군·구

이번 융자지원은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0억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저리인 연 2%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장기 조건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기관은 금리가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동일하다.

융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 및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 재정 여건 개선 비용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용자 대상 기관과 한도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2026.6.10. ~ 2026.7.3.)를 받았다. 이후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9개소에 182억 원(1개소당 평균 20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응급의료취약지 소재 7개소 포함)에 449억 원(1개소당 평균 10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1개소(모두 응급의료취약지 소재)에 369억 원(1개소당 평균 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용자 대상 기관으로 결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용자금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에서 2026년 8월부터 심사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용자지원으로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덜고, 필수 의료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용자사업 개요
2.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현황

담당 부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담당자	주무관	신민경 (044-202-256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단년도 사업)
- (용자대상)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소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
- (재원 및 규모) 응급의료기금 1,000억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용자금리) 연 2%(고정금리)
 -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연 1%(고정금리)
- (용자한도) 권역센터 40억 원, 지역센터 20억 원, 지역기관 10억 원 이내
- (용자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용자내용) 응급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 의료여건 개선 비용, 의료진 인건비 등 응급실 운영비 및 응급실 운영 등을 위한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 재정여건 개선 비용
- (추진절차) 용자계획 수립·시행(복지부) → 용자신청 접수·제출(시·도) → 용자대상 결정(복지부) → 용자 시행(KB국민은행)

□ 용자대상 종별 기관 및 한도액

(단위 : 개소, 억 원)

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94	1,000	9	182	44	449	41	369

붙임2**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현황**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대구	군위군
2.인천	강화군, 옹진군
3.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4.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5.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6.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9.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제주	서귀포시